

2025년 부천시 규제개선 기업·시민 아이디어 공모

우리 시는 다양하고 참신한 규제개선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기업·시민이 실감하는 규제개혁을 추진하고자 「2025년 부천시 규제개선 기업·시민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하니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2025년 4월 28일

부천시장

◇ 공모사항

- 공모명 : 2025년 부천시 규제개선 기업·시민 아이디어 공모전
- 공모기간 : 2025. 4. 28.(월) 10시 ~ 5. 23.(금) 24시 (26일간)
- 공모분야 : 모든 분야 규제개선 과제

구분	분야	세부 내용
지역역점	지역개발·현안	▶ 지역개발, 도시정비 등
경제활동	기업활동	▶ 신산업, 진입·입지, 고용, 생산환경 애로
	자영업자·소상공인	▶ 자영업자·소상공인 창업, 유통, 영업 애로
	취업·일자리	▶ 청년·경력 단절자 등의 취업 애로사항
시민생활	일상생활	▶ 교통, 주택, 의료 등 생활 속 불편사항
행정	행정절차 간소화	▶ 각종 신고·인허가, 행정절차 간소화 등
기타	-	▶ 기타 규제개선이 필요한 사항

※ 비규제(조세·수수료·과태료·보조금 등), 단순 진정, 민원 사항 등은 제외

- 응모자격 : 규제개선에 관심 있는 기업, 단체, 개인 등 누구나 ※ 지역무관

- **응모방법** : 전자우편 또는 우편을 통한 [별지] 공모제안서 제출
 - 전자우편: calista15@korea.kr
 - 우편: (14547)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10, 부천시청 정책기획과 규제혁신팀 (중동)
- ※ 우편 접수 시 마감일(5. 23.) 발송분(소인일자 기준)까지 인정
- ※ 본인 착오로 인한 기간 내 제안서 미도달 시 접수 인정 불가

◆ 선정 및 결과발표

- **선정방법**
 - 접수 → 사전검토 → 소관부서 검토 → 심사 → 결과발표
 - ※ 기간 내 보완 가능한 사항의 경우, 보완 및 재접수를 요청할 수 있음
- **심사기준**: 창의성(30%), 실현가능성(30%), 효과성(40%)
- **시상내용**: 우수 아이디어 10명 선정, 총 150만 원 상당 상금 지급

구 분	최우수	우 수	장 려	노 력
시상금	50만 원×1명	30만 원×1명	20만 원×2명	5만 원×6명
상 장	시장 훈격			해당없음

- ※ 심사 결과에 따라 시상내용 변동 가능
- **결과발표**: 2025. 7월 중
 - ※ 수상자 명단은 시민정책제안 플랫폼 「부천, 제안한섭」 게시 및 개별 통보
 - ※ 심사일정에 따라 발표 일정 변동 가능

◆ 유의사항

- 타인의 아이디어를 무단으로 유용하는 등 제안 내용의 표절, 저작권 침해 등의 분쟁 발생으로 공정하고 건전한 공모 운영에 반하는 경우, 타 기관에서 시행한 공모에서 이미 시상된 과제인 경우, 최종 시상 대상에서 제외
 - ※ 우수 아이디어 선정 이후라도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수상취소 및 시상금 환수
- 본인 착오(우편 발송 주소, 전자우편 주소, 공모 기간 등)로 인한 기간 내 제안서 미도달 시 접수 불인정
- 동일한 내용의 작품이 접수될 경우 먼저 접수된 제안만 인정
- 응모 제안 선정 건 제반 권리는 부천시에 귀속되며, 향후 활용 과정에서 주최 측에 의하여 제안내용이 보완·수정될 수 있음
- 최적이 없을 경우 제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과제 응모 시 반드시 [별지] 공모제안서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함
- 기타 문의사항은 부천시 정책기획과(☎ 032-625-2216)로 문의

《 행정규제 기본 법령 규정 》

✓ 행정규제 범위

□ 행정규제기본법 제2조(정의) 제1항 제1호

- 행정규제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국내법을 적용받는 외국인을 포함한다)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 등이나 조례·규칙에 규정되는 사항을 말한다.

□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2조(행정규제의 범위 등) 제1항 제1호~제4호

1. 허가·인가·특허·면허·승인·지정·인정·시험·검사·검정·확인·증명 등 일정한 요건과 기준을 정하여 놓고 행정기관이 국민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행정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항
2. 허가취소·영업정지·등록말소·시정명령·확인·조사·단속 등 행정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이 행하는 행정처분 또는 감독에 관한 사항
3. 고용의무·신고의무·등록의무·보고의무·공급의무·출자금지·명의대여금지 그 밖에 영업 등과 관련하여 일정한 작위의무 또는 부작위의무를 부과하는 사항
4. 그 밖에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행위(사실행위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 행정규제 적용 예외사항

□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적용범위) 제2항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및 감사원이 하는 사무
 2. 형사(刑事), 행형(行刑) 및 보안처분에 관한 사무
 - 2의2. 과징금,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3. 「국가정보원법」에 따른 정보·보안 업무에 관한 사항
 4. 「병역법」, 「통합방위법」, 「예비군법」, 「민방위기본법」,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및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규정된 징집·소집·동원·훈련에 관한 사항
 5. 군사시설, 군사기밀 보호 및 방위사업에 관한 사항
 6. 조세(租稅)의 종목·세율·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